

울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가합14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현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표

변론 종결2021. 6. 10.

판결 선고2021.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업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기본계획업, 도시관리계획업, 지구단위계획업, 교통 및 재해 관련 평가대행업, 환경 및 경관 관련 평가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 일원의 면적 336,180m²에 'D 일반산업단지(E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4. 9. 26. 피고와 총 용역대금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4. 9. 26.부터 2015. 10. 25.까지로 정한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용역계약서

일반조건

제3조(계약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D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용역의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2014년 9월 26.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단, 계약기간은 사업계획승인 완료일).

1. 관계기간의 협의일자 지연으로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갑(원고를 의미, 이하 같음)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갑과 을(피고를 의미, 이하 같음)이 협의하여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용역의 범위)

본 용역의 업무 범위는 인 · 허가 업무를 총괄 진행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의향서 작성
2. 도시계획 업무
3. 측량 및 각종조사
4. 각종 영향조사

5. 실시설계

제7조(용역비의 지급방법)

갑은 설계용역비를 다음과 같이 을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계약금(계약시 지급)	2014. 9. 26.	15%	150,000,000	
중도금1) 2개월 후(도면완료시)	2014. 11. 30.	10%	100,000,000	
중도금2) 산업단지계획 접수시	2015. 3.	15%	150,000,000	
중도금3) 부서협의 완료시	2015. 5.	10%	100,000,000	
잔금(산업단지 고시일)	2015. 9. 10.	50%	500,000,000	
총계		100%	1,000,000,000	

※ VAT 별도

제8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1.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을은 본 용역수행과정중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용역과업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갑은 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을의 요청에 의거 을에 제공한다.
3. 갑과 을은 업무범위, 자료협조 등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나. 갑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되거나 용역이 중지될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을의 기성된 성과를 인도받은 후 기성 부분에 근거하여 을과 정산토록 한다.

제13조(계약이행의 감독)

갑은 필요한 경우에 을의 용역수행의 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을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작업의 책임)

1. 을은 용역수행 중을 자신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비롯하여 제3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인 피해를 을의 비용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을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조업원이나 고용원(갑의 동의하에 을이 선임한 하청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을은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소유권의 이전)

1.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도면 및 기타 제반 자료는 갑의 소유로서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저작권·특허권·사용권 등의 지적소유권을 포함한 용역성과물의 소유권은 일반조건 제4조 제5항에 의한 을의 용역제공의무 완료와 동시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된다. 다만, 갑이 기성고를 단계적으로 인수할 때에는 그 인수시점부터 당해 기성고의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한다.

★ 세부내역서: 별지1

다.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피고에게 시행자인 원고 명의가 아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제 입주하는 기업의 대표 기업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1) 이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23. F 명의로 창원시에 투자의향서(이하 '이 사건 투자의향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창원시는 2014. 12. 15. 이 사건 투자의향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F에 통보하였다. 창원시가 통보한 검토 결과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입지타당성 관련기관(부서) 주요 검토의견

● 낙동강유역환경청 [조건부]

사업지구 서측 약 1.7km 지점에 위치한 H는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 등 각종 철새가 찾아오는 지역이고 생태계 변화 관찰지역 및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등 보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본 사업의 시행으로 H 철새 도래 및 조류 서식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농지 관련 기관의

농지전용(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의한 개발할당 부하량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바람직하지 않음

III. 입지타당성 종합 분석

● 관련 분야별 입지영향도 분석

3	환경분야	높음	· 입지여건상 기존 주거밀집지역과 매우 인접하여 환경여건이 매우 불리해 질 것으로 판단· 기존 I일반산업단지 및 대산(1)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하여 환경영향검토 및 환경오염 저감대책 수립
---	------	----	--

● 종합의견

입지여건상 I일반산업단지 및 기존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하여 환경여건의 악화가 우려되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 평가항목 등 충분한 검토 및 주민협의 필요(기존 I일반산업단지 및 대산(1)일반산업단지 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영향 평가 시행 및 환경오염 저감대책 수립)

마.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2015. 2. 4.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을 정하여 줄 것을 창원시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창원시는 2015. 2. 26.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서면심의)하고, 「사업예정지는 재두루미 채식지와 기존 I일반산업단지 간의 완충지역으로 당초 I일반산업단지 협의 시, 동 사업예정지(농경지)를 무논으로 조성해 재두루미 서식지의 완충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시된 곳으로 산업단지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심의의견을 포함하여 심의의견 8부를 2015. 5. 7. F에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5. 7.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중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입지 재검토 의견에 대해, 「H와 1.8km 이격되어 있고 창원시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겨울 철새 모니터링 결과 및 H 종합관리계획 등을 고려할 때 영향이 크지 않은 지역으로 판단되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H 겨울 철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음」으로 조치계획(이하 '이 사건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작성하였고, 2015. 8. 13. 창원시에 위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첨부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8. 28.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주민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후 창원시에 개최 결과서를 제출하였다.

사. 창원시는 2015. 8. 21.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관련 기관(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협의기관 중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환경부 예규 제492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 제1호 다목(타당한 사유 없이 주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과 제2호 마목(환경관련지역, 주요보호 대상시설물 등을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수록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한 경우)의 사유로 2015. 9. 23.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창원시에 반려하였다.

아.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초안)가 반려된 후 창원시는 2015. 11. 1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환경분야 협의절차 이행이 불가하여, 더 이상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승인신청 명의자인 F와 주식회사 G 명의로 2015. 12. 28.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창원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E일반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4.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차. 원고는 2014. 9. 29.2) 피고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피고가 설계도면을 완성한 후인 2014.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중도금1)" 기성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후인 2015.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중도금2)" 기성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카.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의 주된 부분인 환경영향평가 통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투자의향서에 대한 창원시의 검토 결과 통보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결과 중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심의의견을 알게 된 단계에서부터 피고가 2015. 7.경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담긴 조치계획 정도만으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절차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위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그대로 첨부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의무와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불허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체결 상의 과실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피고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창원시와의 종전 협의사항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반려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승인 절차 진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선관의무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반려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그때까지 피고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 반려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즉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가 반려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가 반려된 이유가, 피고가 이 사건 조치계획만으로는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행한 기술용역 업무,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절차 이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선관주의 의무 내지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방법이 "계약 시 계약금 1억 5,000만원, 중도금은 3차례로 나누어 계약일로부터 2개월 후 도면 완료시 1억 원, 산업단지계획 접수 시 1억 5,000만 원, 부서협의완료시 1억 원, 잔금은 산업단지 고시일에 5억원"으로 정해진 점,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제11조 1. 나. 항 이외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4)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위 단계별 용역을 수행할 때마다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지 반드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창원시는 2015. 2. 26.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서면심의)하고, 사업예정지는 무논으로 조성해 재두루미 서식지의 완충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시된 곳이어서 그 입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심의의견을 포함한 심의의견 8부를 2015. 5. 7. F에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9. 무렵까지 F(내지 원고)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합동설명회, 관련 기관(부서)과의 협의 등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심의의견과 관련된 부분 외에는 별다른 문제나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불가능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의 사업예정지가 무논으로 조성하여 재두루미 서식지의 완충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시된 곳이라는 사실을 창원시가 2015. 5. 7. F에게 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통보할 당시에야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5)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경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조치계획을 제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심의의견 변경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기도 하였는바, 앞서 본 다른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처리과정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피고가 F 혹은 원고와 무관하게 임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F(내지 원고)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5. 9. 10. 창원시에게 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2009년 I일반산업단지 협의 시 제시된 무논 조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보냈고, 다시 2015. 9. 23. 창원시에게 무논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방안 등이 없다는 이유로 위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반려하였으며, 창원시는 2015. 10. 1. F에게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반려하면서 반려사유가 해소될 경우 재신청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 후 창원시는 재신청 등 F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과 관련된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자 2015. 11. 11.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는바, F(내지 원고)이 피고에게 반려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와 관련된 보완 요청 등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F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이 반려된 직후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하였는데, 그 취지는 이 사건 조치계획이 적절하고 오히려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인 바, 당시 F 내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 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행정심판에서 F의 청구가 기각된 이후 이 사건 소송 전까지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내지 용역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서의 성격과 위탁된 목적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의 위임계약으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피고가 실제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이 사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F 내지 원고와 상당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 2015. 3. 17.경 주식회사 J이라는 업체와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에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맡기는 등 피고가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불성실하게 임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 F 내지 원고 역시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사무의 처리상황 보고를 요구하였다는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탁된 목적, 즉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이 완수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수임인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 반려 처분의 원인이 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치계획을 작성할 당시 피고는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심사의견 외에 다른 관계 부처의 심사의견과 관련한 여러 보완 요구에 관하여 상당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문업체에 다시 용역을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조치계획만으로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가 반려된 이유, 즉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이 무산된 이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고, 마찬가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다. 계약체결 상의 과실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분의 조사 및 자료 수집, 이와 관련 있는 관계행정청과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귀책사유에 기한 중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었으므로 계약체결 상의 과실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 상의 과실책임은 목적이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인바, 이 사건 계약은 그 목적이 불능인 경우가 아니므로 민법 제535조에 따른 계약체결 상의 과실책임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철웅

판사정의철

판사김아름

별지

- 1) F과 함께 주식회사 G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나, 산업단지 승인과 관련한 절차 진행을 F에게 위임하였다(을 제3호증).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업 시행 명의자는 주식회사 G을 포함하여 F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 2) 이 사건 용역계약서 상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 당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5호증 세금계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발행한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가 2014. 9. 29.이므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위 날짜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3) 원고는 2021. 7. 6.자 참고서면에서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담보책임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변론에서 전혀 진술되지 아니한 변론 종결 후의 주장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4) 이 사건 용역계약 제11조 1. 나. 항은 '원고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되거나 용역이 중지될 경우' 피고의 용역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기성 부분에 근거하여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채무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규정에 근거한 정산금 청구는 하지 아니하고 있다.
- 5) F이 피고의 용역업무 수행에 따라 2014. 10. 23. 창원시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투자의향서에

관하여 창원시는 2014. 12. 15. F에게 투자의향서 검토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은 조건부 적정으로 'H 철새 도래 및 조류 서식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업추진이 바람직하지 않음'이라는 추상적인 의견만 기재되어 있고, 재두루미 서식지의 완충지역으로 활용할 무논 조성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내지 이 사건 투자의향서 제출 당시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